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2021. 6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의회 운영 위원회**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(의 회 운 영 위 원 회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시정,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○ 2021. 6. 2.(수) ~ 6. 9.(수) [8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

○ 마포구 의회사무국

4. 감사실시 경과

가. 감사반 편성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의회운영 위원회	[위원장] 최은하 [부위원장] 정혜경 [위원] 강명숙, 김성희, 김영미, 이민석, 채우진	마 포 구 의회사무국	의회운영 위원회실	신준호	최은영

나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자	감사대상부서	감사장소	감 사 방 법	비 고
2021.6.4.(금)	의회사무국	의회운영 위원회실	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·답변	

5. 주요감사 실시내용

- 구의회 앞 녹지공간 개선사업
- 본회의장 환경 개선
- 의회 방송설비 교체 공사 등

6. 감사결과 처리의견

가.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

- 본회의장 환경개선 방송설비 공사와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진행하고,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사용중인 고가의 원목책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람.
-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있어,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국외출장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람.
- 총무과,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구의회 앞 녹지공간 개선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, 추경 예산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길 바람.
-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원들의 구정질문, 조례 발의 등 의회 및 의정 활동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홍보에 지역 언론사들의 능동적, 적극적 참여 바람.

- 그동안 동주민센터는 의회 회의 방송 지원이 불가하여 의원 의정활동 및 구청 상황으로부터 소외되어왔음. 방송설비 교체 공사를 통해 동주민센터도 의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.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, 교육을 비롯하여 준비 및 계획을 철저히 하길 바람.
- 의회 방송설비 교체 공사 계획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전체 의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요망

나. 처리의견

-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의회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21년 7월 30일까지 의장(의회운영위원장)에게 보고하도록 함.